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9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이하 '구조업무'에 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상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 수리비용 및 조업손실보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¹⁾ 및 수난구조참여자²⁾가 해상구조업무, 조난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 물적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 ⑦ (생략) <신설>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업무와 교육·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2) “수난구조참여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조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현행법에서는 수난구호를 위하여 민간자원의 대규모 동원이 불가피한 경우 구조본부의 장 등이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하거나 선박 등 민간자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원 체계를 두고 있는 한편³⁾,

지역해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업인과 민간구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를 지역별로 두어 효과적인 해상 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보상규정을 살펴보면, 수난구호에 동원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등은 수난구호비용을 받을 수 있고,⁵⁾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는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 지원에 대하여

-
- 3)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4)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5)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 기준]

구 분		산출 기준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1) 8시간 이하 (기본수당)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2) 8시간 초과 (초과수당)	시간급 최저임금액 × 초과 활동시간														
	나. 유류비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1) 선박	※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table><tr><th>유류 종류</th><th>산출 기준</th></tr><tr><td>경유</td><td>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td></tr><tr><td>휘발유</td><td>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td></tr><tr><td>BA·BB유(중유)</td><td>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td></tr></table> ※ 유가 기준 <table><tr><th>선 종</th><th>지급 기준</th></tr><tr><td>어선</td><td>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td></tr><tr><td>어선 외의 선박</td><td>한국석유공사 공시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 정유사 공급가</td></tr></table>	유류 종류	산출 기준	경유	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BB유(중유)	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선 종	지급 기준	어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 공시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 정유사 공급가
	유류 종류	산출 기준														
경유	활동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활동시간 × 마력 × 0.209리터															
BA·BB유(중유)	활동시간 × 마력 × 0.106리터															
선 종	지급 기준															
어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 공시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 정유사 공급가															
2) 항공기	※ 유류소모량 :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유류소모량: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유류소모량 유가: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고급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 또는 실거래가 중 낮은 금액															
다.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지급															
2. 교육·훈련 수당	가. 동원비	※ 1명당 1일 1회로 한정, 총 교육·훈련 시간의 3분의 2 이상 참여자														
	1) 집합교육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8시간 교육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 4시간														
	2) 온라인교육	시간급 최저임금액 × 교육 시간(8시간 이내 인정)														
	나. 유류비	※ 제1호나목의 출동수당의 유류비 지급기준 준용 지급														
	다.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운임(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지급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이하 수난구조참여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제29조(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그런데 최근 민간의 해양구조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구조 또는 훈련 활동 중 장비 고장 및 파손으로 조업중단 등 물적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구조법」에는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물적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해양구조대의 제도화 및 해상 인명구조의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조참여자(가) 입은 장비 고장 및 파손 등의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 물적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해양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가능케 하고, 수난구조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장비 수리비용 등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른 법률에 마련된 보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⁷⁾

자율방범대(경찰청) 또는 의용소방대(소방청)의 경우에도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자율방범대법」이나 「의용소방대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소방기본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유사 민간협력조직의 인적피해, 물적피해 보상 체계 비교]

구 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손실보상)	재난안전법 (제65조 치료 및 보상)	의사상자법 (제8조 보상금, 제9조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인적피해	생명·신체상 손실시 의사상자법 준용 (보상금, 의료급여)	사망, 장애 시 의사상자법 준용 (보상금, 의료급여)	부상, 장애 및 사망시 의사상자법 준용 (보상금, 의료급여)	사망, 부상 시 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
물적피해	물건의 멸실·훼손시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 또는 <u>영업손실 금액</u>	물건의 멸실·훼손시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 또는 <u>영업손실 금액</u>	장비손상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	물건의 멸실·훼손시 수리비 또는 교환가액

7)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조난사고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또한 개정안의 경우 타법과는 다르게 “교육·훈련”에 대한 물적피해도 추가로 보상된다는 특징이 있는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물적피해에 대한 중복 보상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제4항⁸⁾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복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을 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으므로, 부칙에서 적용례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은 민간구조 참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장비 손실피해

8)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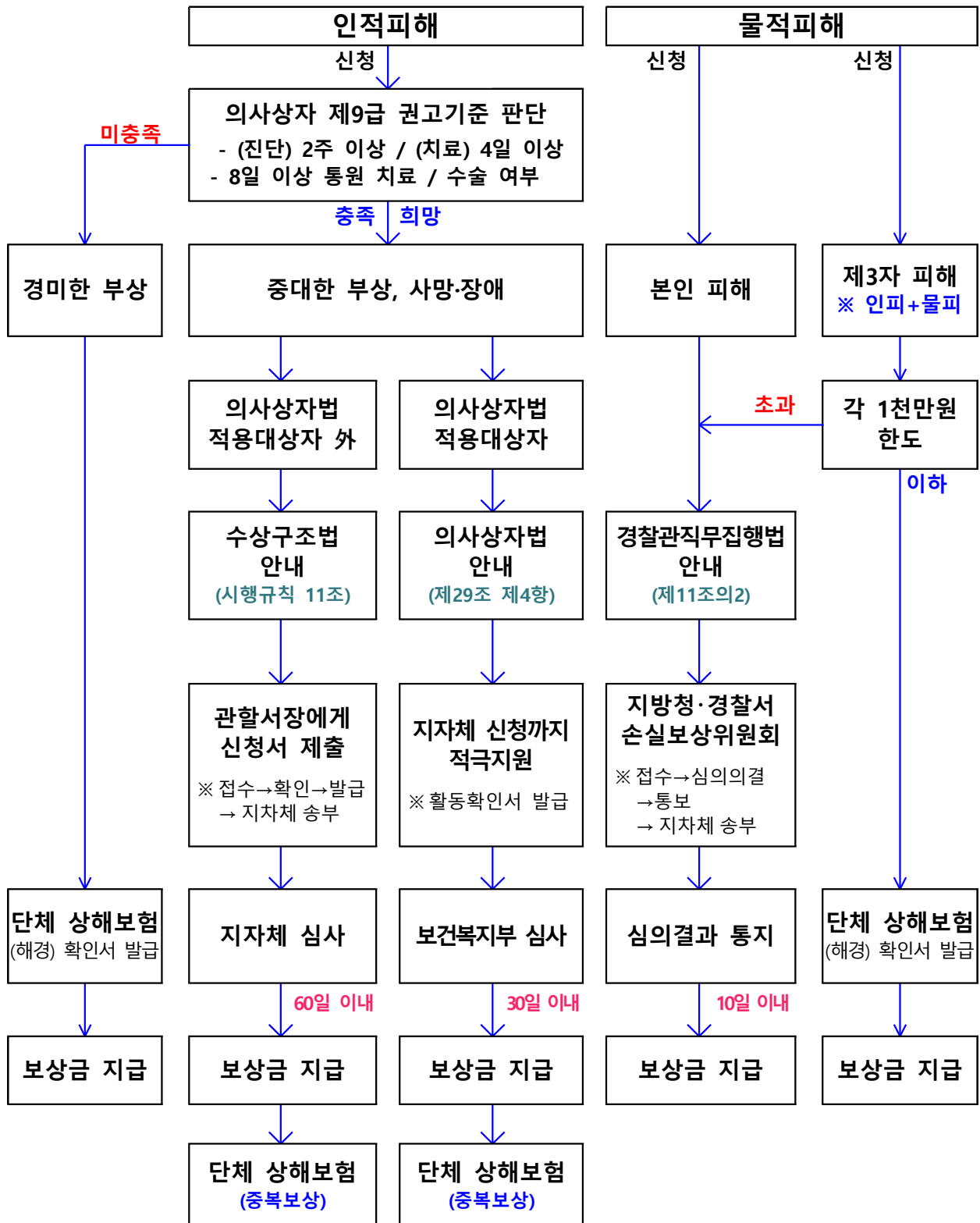
상황과 해양에서 수난구조활동의 위험성, 선박 등 고가의 장비 파손에 따른 손실 규모를 고려할 때 수상구조에 관한 현행법에 직접 그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 그 보상 여부나 보상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에 대한 장비 수리비용 등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른 법률에 마련된 보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민간 구조 참여 중 피해 발생 시 보상 체계



* 자료 : 해양경찰청

참고2

'18년~'24.5월 민간 구조참여 중 피해 및 보상현황건별 금액

(단위: 천원)

발생일자		물적피해 보상금액					인적피해 보상금액					
		피해 추산	손실 보상 (경직법)	제3자 보험	수상 구조법	비고	피해 추산	손실 보상 (경직법)	단체 보험	수상 구조 법	의사 상자	비고
'18년	계	7,600	-	-	-	-	-	-	-	-	-	-
	10.3.	7,500	-	-	-	조난자 직접 보상	-	-	-	-	-	
	10.6.	100	-	-	-	-	-	-	-	-	-	
'19년	계	3,600	-	-	-	-	3,600	2,020	-	-	-	-
	1.15.	2,600	-	-	-	-	-	-	-	-	-	
	1.19.	-	-	-	-	-	3,600	2,020	-	-	-	
	5.3.	1,000	-	-	-	수협보험	-	-	-	-	-	
'20년	-	-	-	-	-	-	-	-	-	-	-	
'21년	계	141,640	4,140	-	-	-	1,000 +우안실명	-	500	-	110,500	
	3.29.	130,000	-	-	-	수협보험	-	-	-	-	-	
	4.17.	400	-	-	-	-	-	-	-	-	-	
	5.8.	650	-	-	-	-	-	-	-	-	-	
	7.31.	10,000	3,550	-	-	-	-	-	-	-	-	
	10.5.	-	-	-	-	-	500	-	500	-	-	
	10.21.	-	-	-	-	-	우안실명	-	-	-	110,500	의상5급
	10.25.	-	-	-	-	-	500	-	-	-	-	
	12.20.	590	590	-	-	-	-	-	-	-	-	
'22년	계	71,823	53,420	10,373	-	-	324 +전치2주	-	-	324	11,080	-
	2.12.	30	-	-	-	-	-	-	-	-	-	
	3.4.	-	-	-	-	-	전치2주	-	-	-	11,080	의상9급
	4.22.	2,300	2,300	-	-	-	-	-	-	-	-	
	5.17.	51,120	51,120	-	-	-	-	-	-	-	-	
	6.17.	8,000	-	-	-	-	-	-	-	-	-	
	7.15.	10,373	-	10,373	-	-	-	-	-	-	-	
	9.3.	-	-	-	-	-	324	-	-	324	-	
'23년	계	14,359	9,849	-	422	-	-	-	-	-	-	
	5.22.	6,082	1,994	-	-	-	-	-	-	-	-	
	7.9.	2,655	2,655	-	-	-	-	-	-	-	-	
	8.18.	422	-	-	422	-	-	-	-	-	-	
	10.6.	5,200	5,200	-	-	-	-	-	-	-	-	
'24. 5월	계	792	72	-	-	-	전치6주	-	-	-	11,944	
	4.12.	-	-	-	-	-	전치6주	-	-	-	11,944	의상9급
	5.4.	792	72	-	-	-	-	-	-	-	-	

* 피해추산액은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 주장 액수, 시중가격, 실제 수리 소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실제 보상 절차에서는 구조활동과 손실의 인과관계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액이 결정되고 있음.

* 자료 : 해양경찰청